

● 제28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2492,2493,2494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 5. 31.
- 다. 회부일 : 2018. 6. 11.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59,647 백만원
- 징수결정액 : 177,306 백만원
- 실제수납액 : 174,073 백만원
- 미수납액 : 3,233 백만원
- 결손처분 : 21 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3,212 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8.1%(전년도 98.0%)임.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59,647	177,306	174,073	3,233	
일반회계	159,646	177,306	174,073	3,233	
세외수입	41,375	59,422	56,189	3,233	
경상적세외수입	36,318	36,676	36,631	45	
임시적세외수입	5,057	22,746	19,558	3,188	
지방교부세		150	150	0	
지방교부세		150	150	0	
보조금	117,583	116,628	116,628	0	
국고보조금 등	117,583	116,628	116,628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89	1,106	1,106	0	
보전수입등	678	1,096	1,096	0	
내부거래	11	10	10	0	

2. 세출결산

- 예산액 : 438,883백만원
- 예산증감 : 10,409백만원
- 예산현액 : 449,285백만원
- 지출액 : 434,192백만원
- 이월액 : 4,472백만원
- 불용액 : 10,621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3%(전년도 2.8%)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48백만원,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8,47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92백만원

〈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 = A-B-C)	불용율 (%)
총 예산	449,285	434,192	4,472	10,621	2.36
정책사업예산계	439,458	425,335	4,472	9,651	2.20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147,922	141,849	3,484	2,589	1.75
시민건강수준향상	101,498	99,719	0	1,779	1.72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9,071	7,933	0	1,139	12.56
생활보건 관리 향상	128,236	127,669	0	567	0.44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4,908	4,290	0	617	12.57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2,098	11,183	98	817	6.75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18,685	17,190	678	817	4.37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17,040	15,502	212	1,326	7.78
일반예산계	9,827	8,857		970	9.87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9,827	8,857		970	9.87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9건 654백만원

다. 예산 이체 : 2건 173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12건 1,453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1건 215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8건 4,471백만원

- 명시이월 : 2건 2,663백만원

- 사고이월 : 6건 1,808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령액 : 111,307백만원
- 집행액 : 110,470백만원
- 이월액 : 39백만원
- 집행잔액 : 797백만원

3. 기금결산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①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식품진흥기금	67,538	263	3,702	3,966	67,274

- 기금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0,741	계	10,572
용자금회수	1,113	비용자성사업비	3,541
예탁금회수	-	용자성사업비	379
예치금회수	7,038	기본경비	3
이자수입	1,039	예치금	6,605
기타수입	1,549	기타지출	9
		인력운영비	32

4. 채권현재액 : 3,882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60,198m² 444,411백만원
- 건물 320,070m² 395,974백만원

총 840,385백만원 상당의 금액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시민건강국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40개, 현재액 17,609만원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일반 회계)	수량	31	8	2	10	0	1	1	40
	금액	157	18	4	22	0	3	3	176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예산 추계의 과학성 필요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다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의 정책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시민에게 전가됨. 세입의 추계는 예산의 사용계획에 있어 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예산을 통한 자원 배분 등 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의 하나임.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의 정책입안과 집행,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합리적 자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사유임.
-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 시민건강국은 과학적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매년 과부족액이 크게 나타나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같은 경우는 과학적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예산편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통계목으로 여겨짐.
- 시·도비 반환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치구로 내려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시도비반환금액이 커질수록 시민건강국 사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시민건강국이 시·도비 반환금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치구로 내려 보낸 사업이나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
공유재산 임대료	952,399	118,978	118,978	△833,420	장례식장 무단점유사태로 기납부한 사용자의 사용기간 변경(서북병원)
징수 교부금 수입	63,023	106,366	106,366	43,343	먹는 샘물 계획대비 수입량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증가
과징금	3,916	8,791	8,791	4,875	법 개정 및 타 기관 실시 점검결과 위반 통보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자 증가(동물보호과)
불용품 매각대	22,976	27,646	27,646	4,670	불용물품이 작년과 상이하며 투찰금액 증가(보건환경연구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814,041	15,074,443	13,017,570	8,203,529	예산액은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으로 산정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보다 많은 금액이 반납되어 본예산과 차이를 보임
지난 연도수입	187,735	1,150,872	875,336	687,601	지난연도 체납 이월금의 세입에 따른 수입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
과태료	27,993	19,037	10,793	△17,200	흡연단속 과태료 체납
지난연도 수입	-	328,170	291,399	291,399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인한 부족수납 발생
기타 이자수입	-	96,676	96,676	96,676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이자발생 수입 증대
변상금	-	96,676	96,676	96,676	장례식장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서북병원)
위약금	-	441	441	441	불용용품 매각 계약시 일부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여 그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세입처리함(보건환경연구원)
그 외 수입	-	6,368,308	5,521,013	5,521,013	시립병원 등 보조금정산 반납(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보조금 장기체납 독려 수입(건강증진과), 시설개선비(서북병원) 등

나. 세입예산 미편성이나 징수 및 세입 조치

- 세입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징수한 내역 중 그 외 수입의 경우 전년도에도 그 외 수입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는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
기타 이자수입	-	328,170	291,399	291,399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이자발생 수입 증대
변상금	-	96,676	96,676	96,676	장례식장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서북병원)
그 외 수입	-	6,368,308	5,521,013	5,521,013	시립병원 등 보조금정산 반납(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보조금 장기체납 독려 수입(건강증진과), 시설개선비(서북병원) 등

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 과도한 차이 발생

- 세입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결정하여 징수한 내역 중 과태료의 경우 전술한 문제점 외에도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시민건강국은 자치구 단속지원에 집중하여 예산편성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작다고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족한 것에 대한 설명

은 부족함.

- 관련하여 제도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원한 것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지 않음. 금연구역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책정하였다면 세입예산으로 편성에 따라 징수에 노력 하여 세입을 확보해야 함
- 이는 그간 체납된 과태료를 결손처분 하였기 때문인데 결손처분이 타당한가에 대하여서는 본 결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과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
과태료	-	19,037	10,793	△8,244	흡연단속 과태료 체납
지난연도 수입	187,735	1,150,872	875,336	△275,536	자치구 예산미확보로 인한 부족수납 발생

라. 결손처분 관련

- 시민건강국은 과태료를 결손처분한 바 있음. 2017년 결손처분의 경우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인데 과태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임. 그러나 재고지, 독촉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의 시효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그렇다면 실제 시효완성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소액의 과태료라 하더라도 처벌적 성격이며 처벌의 결과를 무시하는 사

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연간 약 65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적인 성격의 과태료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세입조치 되고 있지 않다면 시민들이 해당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 있다고 할 것임.
- 과태료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업에서 금연단속요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표〉 세입의 결손처분

(단위: 천원)

회계년도	결손액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현황
2016	252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반납을 위한 공문시행 예정
2017	20,523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119건 (건당 평균 172천원)으로 정기적 주소조회 및 독촉고지 실시

마.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가내시 및 확정내시를 통하여 지급됨. 서울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자료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이후 국고보조금이 과소하게 확정내시 될 경우 예산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존재.

- 살펴보면 과대교부 사례의 경우 3건으로 7천만원이 증액교부 되었으며 과소교부의 경우 19건으로 10억2천만원이 과소교부 되었음.
- ※ 식품정책과의 어린이 우유급식사업의 경우 매해 불용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6천5백만원 증액되어 교부되었으며, 반대로 전액국비사업이라고는 하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보조금,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등의 사업은 3억5천만원 과소교부되었음.
- 중앙정부나 관계부서의 일방적인 보조금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의 변경이나 의회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분권의 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 또한 국비 감액 내시로 인하여 사업대상의 축소 등이 예상되는바 변동되는 사업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표〉 국고보조금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국비	시비	예산현액	국비수령액	교부액
1	보건의료 정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87,065	78,533	265,598	186,665	88,933
2	보건의료 정책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50,000	250,000	500,000	255,000	45,000
3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기관평가결과 보조금(국비)	사무관리비	27,000	-	27,000	6,100	20,900
4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기관평가결과 보조금(국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5,075,000	-	5,075,000	5,021,900	53,100
5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등(국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340,000	-	340,000	60,000	280,000
6	보건의료 정책과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재난응급 의료무선통신망 운영(국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105,644	45,276	150,920	82,327	68,593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국비	시비	예산현액	국비수령액	교
7	보건의료 정책과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광역별 재난의료전담 인력 배치(국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165,000	235,500	400,500	143,000	
8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05,000	52,500	157,500	67,554	
9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931,640	2,679,492	11,611,132	8,931,253	
10	건강 증진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선천 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912,000	1,016,370	1,928,370	725,175	1
11	식품 정책과	축산물 이력제 실시	민간경상사업 보조	144	144	288	149	
12	식품 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060,380	706,920	1,767,300	1,125,928	△
13	식품 정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695,582	1,978,178	3,673,760	1,570,000	1
14	식품 정책과	건강기능식품 관리	재료비	40,230	40,230	80,460	20,340	
15	식품 정책과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73,600	-	73,600	12,800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국비	시비	예산현액	국비수령액	고
16	생활 보건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738,320	3,195,107	5,933,427	2,737,120	
17	생활 보건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532,285	3,032,285	5,564,570	2,515,285	
18	생활 보건과	병원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 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국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48,500	-	448,500	350,000	
19	생활 보건과	결핵 관리-보건소결 핵관리사업(국 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372,826	547,337	920,163	357,845	
20	생활 보건과	결핵 관리-보건소결 핵관리사업(국 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663,397	2,045,753	4,709,150	2,637,877	
21	생활 보건과	결핵관리-의료 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47,000	-	1,947,000	1,914,000	
22	생활 보건과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410	60,410	120,820	56,097	

2 세출 결산 검토

-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총액은 4,388억원이고 이 중 4,28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억원(불용률2.4%)로 나타나 전년도(2016년 불용률 2.8%) 결산 대비 불용액과 불용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가. 예산의 변경(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사례

-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용금액은 6억5천4백만원 임. 사업환경변화로 인하여 전용했다는 것이 시민건강국의 주된 해명임.

〈표〉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증감		집행잔액 (불용률)
					전용	변경사용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 위탁금	5,106,850	-79,739	0	0 (0.0%)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 대행 사업비	1,581,790	79,739	0	0 (0.0%)
3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 료재단 설립·운영	사무 관리비	15,000	157,000	0	51,012 (29.7%)
4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 료재단 설립·운영	출연금	2,919,273	-254,000	0	0 (0.0%)
5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 료재단 설립·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0	97,000	0	15,504 (16.0%)
6	건강 증진과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5,000	125,000	0	3,100 (2.4%)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증감		집행잔액 (불용률)
					전용	변경사용	
7	건강 증진과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업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495,000	-125,000	0	0 (0.0%)
8	동물 보호과	유기동물보 호 지원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720,000	-500	0	10 (0.0%)
9	동물 보호과	동물복지지 원시설 조성사업	사무 관리비	200,000	-40,000	-50,000	9,792 (8.9%)
10	동물 보호과	동물복지지 원시설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00	40,000	0	10,154 (5.3%)
11	동물 보호과	가축방역- 살처분보상 금 (시비)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13,000	500	0	655 (4.9%)
12	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1,598,858	-50,350	0	70,901 (4.4%)
13	보건환경 연구원	시도가축방 역-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국비)	재료비	117,753	50,350	0	13,515 (8%)
14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오염 물질검사	공공 운영비	781,500	-80,000	0	97,590 (12.4%)
15	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1,598,858	-24,641	0	70,901 (4.4%)
16	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20,650	104,641	0	68,025 (16%)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2건으로 나타났으며 변경금액은 14억 5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남. 예산편성 상의 통계목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10억원 변경사용(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표〉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집행잔액 (불용률)
					증감 변경사용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332,760	-1,000,000	0 (0.0%)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0	1,000,000	0 (0.0%)
3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의료 및 구료비	0	-71,060	0
4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민간경상사 업보조	71,060	71,060	0 (0.0%)
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 설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3,526,016	84,164	29,555,040 (0.8%)
6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 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2,625,162	-56,164	56,999,070 (2.2%)
7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 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18,439,760	-59,551	929,677,00 0 (5.0%)
8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726,449	59,551	1,000 (0.0%)
9	보건의료 정책과	광역정신건 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873,383	-28,000	51,713 (1.8%)
10	건강증진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 숙아 및 선천성이상 아 의료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114,288	47,630	0 (0.0%)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집행잔액 (불용률)
					증감 변경사용	
		지원(국비)				
11	건강증진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선 천성대사이 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928,370	-47,630	357,158 (18.5%)
12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 원시설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10,000	-50,000	9,792 (8.9%)
13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 원시설조성 사업	재료비	50,000	50,000	1,515 (3.0%)
14	동물보호과	가축방역-구 제역및SI 예방약품 구입 지원(국비)	사무관리비	64,530	-2,970	1,155 (1.8%)
15	동물보호과	가축방역-구 제역및SI 예방약품 구입 지원(국비)	공공운영비	26,730	2,970	4,081 (15.3%)
16	어린이병원 일무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11,227,838	-30,000	300,833 (2.7%)
17	어린이병원 일무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감리비	403,000	30,000	0 (0.0%)
18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건축사업-지 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사무관리비	147,500	-100,000	1,634 (1.1%)
18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건축사업-지 역거점	공공운영비	0	100,000	2,350 (2.4%)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집행잔액 (불용률)
					증감 변경사용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19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국외업무 여비	14,000	-5,463	3,826 (27.3%)
19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특정업무 경비	161,400	5,463	50 (0.03%)
20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기본경비	국내여비	278,880	-2,825	40,574 (14.5%)
20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기본경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33,600	2,825	810 (2.2%)

- 이 외에 예산의 이체와 이용은 2017년 결산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예산의 변경사용과 관련하여 시민건강국 전체 세출예산의 약 4%가 변경(이용, 변경)사용 된 바 사업별로 원인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임.

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 시민건강국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 2억5천4백만원을 전용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5천7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천7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불용액 (비율)
				증액	감액		
보건 의료 정책과	공공보건 의료재단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15,000	157,000		172,000	51,012 (29.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5,000	0
		출연금	2,919,273		254,000	2,665,273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97,000		97,000	15,504 (16.0%)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혁신의 플랫폼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씽크탱크로서의 정책도출,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재단은 시립병원의 혁신과 전문적 지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플랫폼 및 씽크탱크로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 2017년 7월 설립되었음.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7월 24일 7억원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음.¹⁾

○ 위와 같이 중대한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 초기부터 보건의료정책과는 부적절한 예산 추계를 이유로 공공보건의료재단

1) 보건복지부 설립허가일 2017년 6월 29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함.

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출연금 중 2억5천4백만원을 타 통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출연금은 행정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로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와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 출연 필요성에 대한 검토, 출연금 규모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17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2016년 8월 12일 시장 제출, 의안번호 1331)에 대한 심의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검토,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 출연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을 마친바 있으며 2017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출연금 규모에 대한 검토도 마쳐 의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출연금에 대한 예산 전용이 나타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남.
- 동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9천7백만원 증액변경 되었는데 해당 항목은 예산 심의 당시 없던 통계목으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집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원(16.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다음으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1억5천7백만원 증액하여 지출하였으나 5천1백만원이 불용되어 해당 통계목의 불용비율은 약 29.7%임.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당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이는 사업의 진행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에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

-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동 예산을 전용하게 된 배경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등기가 늦어 2017년 내에 재단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시민건강국이 재단의 전산기기 등을 미리 구매하고 재단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절차 상 하자로 인하여(보건복지부의 재단설립 인가일 2017년 6월 29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하기 위한 주장일 뿐 실제 집행된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살펴보면 인테리어나 그룹웨어 구매 등으로 재단이 직접 수행했어야 하는 사업을 시민건강국이 재단 설립 이전에 대행한 것으로 보임. 또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산품의와 달리 실제 집행에서 낙찰차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 사무관리비로 1억5천7백만원을 전용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억7천2백만원이 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억2천만원으로 5천만원(29.2%)가 불용되었음.

- 전용은 예외적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품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높은 불용액을 기록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음. 또한, 집행부가 밝힌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2017년 한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사업’은 예산이 집행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한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2017년 기말 현금액²⁾은 19억원으로 출연금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관련 조례의 의결, 출연동의안의 의결 및 예산안의 의결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전문적 관리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연계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결정임. 이에 서울시 의회가 재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이유를 들어 예산의 전용과 불용이 나타난 바 2018년 사업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2019년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 서울시의회가 2017년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29억1천만원의 출연금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 등으로 5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5천만원은 출연금이 아닌 시금고로 돌아가게 되었음. 출연금대비하여 1.6%정도의 금액이나 출연금은 출연동의안의 심의³⁾와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사례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신정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3) 다만 이때 예산액을 정하지는 않음.

2) 동부병원 위탁운영

- 동부병원은 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용일자는 2017년 8월 18일임.

〈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후 예산액	불용액 (비율)
				증액	감액		
보건 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 위탁금	5,106,850		79,739	5,027,111	0 (0.0%)
		민간대행 사업비	1,581,790	79,739		1,661,529	0 (0.0%)

- 전용사유는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것인데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이 5억2천만원이고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8억2천만원으로 3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전용 외 사업비 확보 방안

- 통계목 내 예산 변경 사용
 - 변경금액 : 48,160천원
 - 관련 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민간대행사업비 402-03)
 - 변경방법 : 통계목 내 의료장비 27,100천원, 병원시설환경개선공사 9,000천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2,100천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9,960천원 (불용액 및 낙찰차액)을 장례식장 리모델링 운영비 48,160천원으로 변경 사용
- 병원 예산 사용
 - 사용금액 : 172,101천원
 - 사용방법 : 동부병원 운영 예산 중 일부를 병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사용예산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관,항,목) 구분		2017년예산	기집행액	집행예정액	집행잔액	사용예산액	
총계		31,329,923	14,122,621	16,877,302	330,000	300,000	
사업 예산	의료 비용	인건비	17,983,030	8,321,481	9,661,549	0	0
		재료비	4,127,787	1,947,833	2,179,954	0	0
		관리운영비	7,121,528	3,101,845	3,823,171	196,512	전용예산: 79,739
	의료 외 비용	278,458	200	222,930	55,328	병원예산: 172,101	
	예비비	20,000	0	0	20,000	0	
자본 예산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	68,000	12,400	55,600	0	0
		유형자산	1,721,120	738,862	934,098	48,160	변경예산: 48,160
	예비비	10,000	0	0	10,000	0	

- 동부병원은 이를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1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불용액 및 낙찰차액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중 4천8백만원을 확보한 뒤 보건의료 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금 중 7천9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해당 전용은 8월에 시행되었는데 서울시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2일에 제출되었으며 의결은 7월 21일에 되었음.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계획 등을 포함시켜 예산의 증액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았음.
-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불용액, 낙찰차액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프로그램예산제도하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달성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예산의 예외적 목적의 사용이라 할 수 있는 전용은 타당한 사유 하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동부병원 위탁운영의 예산 전용건은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이유는 동부병원이 장례식장 리모델링의 경우 3개월 가량 기간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에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애초 심의된 예산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며 이에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

나 결과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전용하여 동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하였음.

- 또한 동부병원은 병원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늦춘 점, 병원 자체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이것이 관리운영비를 최대한 절제하며 사용한 점은 지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서는 상반기에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을 막을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고 보임.

※ 의료법 제49조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의료인 양성이나 보수 교육, 의료나 의학의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 사업, 그 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동부병원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장례식장의 조기개소를 통해 재정상황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받은 예산 범위내의 지출을 고려하기 보다는 전용 등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시기를 늦춘 점, 예산의 전용시기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후인 점 등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도전이자 거부로 보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시립병원의 민간위탁금이 가진 의미가 공공의료 손실에 대한 보전이며 자본적 지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란 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시기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후인 점 등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도전이자 거부로 보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 할 것임.

- ※ 물론 예산의 전용이 경직된 예산사용 보다는 유연한 예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동 사례와 같이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3)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중 4천만원을 전용하고 사무관리비 중 5천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며 재료비 통계목 신설 및 변경, 전용 사용 후 불용액 발생 등 예산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임.

- ※ 사무관리비는 전체 2억원 중 9천만원이 전용과 변경을 통해 타 통계목으로 변경사용되었음.

- 동물복지지원시설은 마포구 상암동 S-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입양센터, 동물병원, 동물보호교육센터, 커뮤니티 룸 등의 구성으로 학대 및 유기동물에 대한 인수 보호, 입양관리 및 동물병원으로의 역할과 동물관련 교육을 하는 시설임.

〈표〉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변경금액		전용후 예산액	불용액 (비율)
				증액	감액	증액	감액		
동물 보호과	동물복지 지원시설 조성사업	사무 관리비	200,000		40,000		50,000	110,000	9,792 (8.9%)
		재료비	0			50,000		50,000	1,515 (3.0%)
		시설비	(x300,000) 790,000					790,000	172,739 (21.9%)
		시설부 대비	10,000					10,000	10,000 (1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00	40,000				190,000	10,154 (5.3%)

- 동물복지지원시설은 마포구 상암동 S-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입양센터, 동물병원, 동물보호교육센터, 커뮤니티 룸 등의 구성으로 학대 및 유기동물에 대한 인수 보호, 입양관리 및 동물병원으로의 역할과 동물관련 교육을 하는 시설임.
- 동물보호과는 전용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억원, 시설공사 8억원, 주요장비 1억5천만원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 하였으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재료비 5천만원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변경사용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동물보호과의 해명과는 달리 예산편성의 오류로 보임. 사무관리비

는 재료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유기, 학대 동물의 보호 및 치료, 동물병원으로서의 기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의 통계목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일임. 같은 국에서 하고 있는 타 사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료비를 예산통계목에 편성한 것이 다수 있음.

- 결과적으로 동 변경사용의 경우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변경사용한 것임. 같은 편성목이라 하더라도 그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안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할 것임.

※ 2016년 7월 발간한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은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 등을 의미하지만 재료비(201-06)는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 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집행의 범위는 현저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료비의 통계목은 신설된 사항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고려된 통계목이 아닌 점을 볼 때, 예산의 변경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음.
- 또 시설비의 경우 7억9천만원 중 1억7천2백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비율이 21.9%에 이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비가 불용되었다고는 하나 높은 수준의 불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업계획이 초기에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 동물복지지원사업이 예산의 변경과 전용을 통해 신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하지만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 재량껏 융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업계획의 부분적 변동이나 여건이 바뀐 것은 시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변경제도의 활용은 외려 시설비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시설비의 불용액이 전체 변경사용액(9천만원)보다 8천2백만원이 나 높음.
- 이 외에도 예산을 변경사용한 재료비의 경우 3.0%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경우에도 5.3%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또한 사무관리비는 초기 2억이었으나 변경사용후 1억1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1억1천만원에 대하여서도 8.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사무관리비 예산이 과도하게 측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 만약 사무관리비가 본래대로 2억원이었다면 약 50%가 불용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임.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 작성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며 비과학적인 예산추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 한 것이 사무관리비의 불용액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할 것임.

〈표〉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변경 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불용액	불용비율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원 시설조성사업	사무 관리비	110,000	9,792	8.9%
		재료비 (통계목 신설)	50,000	1,515	3.0%
		시설비	(x300,000) 790,000	172,739	21.9%
		시설부대비	10,000	10,000	1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0,000	10,154	5.3%

- 시민건강국은 전용(변경)사유로 2017년 4월 기본계획 수립, 10월 센터운영의 구체화를 통해 일부예산의 재편성이 필요했다는 것임. 그렇다면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분히 반영가능한 시기임. 이에 따라 통계목 신설, 예산의 변경 및 전용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임. 또한 전용시기를 볼 때 이미 시설비에 대한 발주는 끝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비를 전용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이예산편성에의 오류를 희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국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점은 집행에의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할 것임.
- ※ 국비보조금이 있기에 시설비의 변경사용이 불가했다고 이야기 하나 시설비는 서울시 7, 농림부 3의 비율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설비 중 1억1천만원은 반납하는 국비가 됨. 이는 국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농림부와 서울시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서울시는 조성사업 전체에 대한 보조금이 3억으로 생각하여 총 11억5천만원(국비3

억원 포함)을 편상하였으나 농림부는 시설비로만 국비 3억원을 확정내 시 한 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하였다고 보임.

- 따라서 동물보호과의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예산편성의 오류를 회색시키기 위해 전용 및 변경사용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9월에 변경사용한 것은 한 것은 7월에 있었던 추경을 통해 통계목의 신설이나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사무관리비를 감추경을 통해 정당한 집행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예산변경제도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변경사용 등 예산의 신축성 있는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다수 나타난 것은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전체 세부사업을 보더라도 11억 5천만원 중 2억 4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불용비율은 약 17.7%에 이룸. 불용비율이 낮은 편도 아니며 불용액이 낮은 편도 아님. 비과학적 예산추계와 예산편성의 오류로 인한 결과이며 예산을 변경사용했음에도 불용액과 불용율이 높다는 것은 동 사업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짐.

- 집행부는 시설비로 관악구 봉천동 가압장을 관리전환을 받아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대주택과 한가운데 있어 민원 등으로 인하여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에스플렉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의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예산편성 당시 민원이 예측불가능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⁴⁾ 농림부와의 소통 미숙으로 인한 국비보조금의 과대 교부 등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국비보조금이 3억원인데 지방비와 국비는 각각 7:3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할 것임.

4)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많은 민원이 존재했음. 동물복지시설이

※ 국고보조금이 3억원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7억원을 시설비로 책정했어야 함 그러나 국고보조금 3억원 외에 시설비 4억9천만원(총 7억9천만원)만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 집행이 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 편성 당시부터 오류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임. 또한 아래의 가내시 알림 공문과 같이 가내시 당시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그 통계목이 지정되어 내려왔음.

2017년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등 사업자 선정 결과 및 예산 가내시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6897) 중 일부 내용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지원>					
우선 순위	지자체명	사업비(백만원)			지원조건
		국비	지방비	소계	
	3개소	900	2,100	3,000	국비 30%, 지방비 70%
1	서울	300	700	1,000	
2	전남 순천	300	700	1,000	
3	경기 수원	300	700	1,000	
※ 사업구분 : 축산물안전관리-가축방역(농특)-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동 사업은 예산편성오류로 인해 변경 및 전용한 사례이며 변경과 전용을 한 이후에도 불용액이 높은 점. 국고보조금 만큼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시민건강국은 소통당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나 공문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음)등을 고려해 볼 때 높은 강도의 결산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나. 반복적인 이월 사업

- 시민건강국은 2016년 회계연도에 101억8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61억2천2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0억6천3백만원 임. 명시이월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한 것임.

〈표〉 시민건강국 전년 이월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증감		집행잔액 (불용률)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1	어린이 병원 일무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5,135,493	6,122,345	0	300,833 (2.7%)
2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무관리 비	80,000	0	103,878	1,600 (0.9%)
3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0	0	2,387,149	20,181 (0.8%)
4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 설 기능보강	감리비	0	0	101,743	0 (0.0%)
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 설 기능보강	시설부대 비	0	0	7,084	5,715 (80.7%)
6	생활 보건과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시설비	0	0	379,342	11,550 (3.0%)
7	서북병원 일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544,430	0	1,084,259	64,058 (3.9%)

- 시민건강국은 2017년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2018년으로 43억7천4백 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25억9천만원과 시설비부대 7천만원을 포함하여 26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7억1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시민건강국 이월 사업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예산 성립 후 증감		집행잔액 (불용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시설비	3,536,000	2,593,541	673,087	30,372 (0.9%)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시설부대 비	100,000	70,000	16,668	0 (0.0%)
3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감염병전문 센터 설치	시설비	150,000	0	131,195	18,804 (12.5%)
4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석축보강 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시설비	886,131	0	677,959	41,766 (4.7%)
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544,430	0	211,590	64,058 (3.9%)
6	보건환경 연구지원 부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공공운영 비	100,000	0	97,650	2,350 (2.4%)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으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됨.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원인행위만 한다면 때로는 원인행위 미필액의 경우에도 사고이월 하는 등 예산 사용의 예외적 사유를 상시적 사유로 이용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남.

※ 예산의 이월은 사업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로 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이유 없이 사업이 늦추어지는 경우 사고이월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1)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관련사업

- 시민건강국은 병원 등의 공사를 이유로 하여 사고이월사업이 다수 존재함. 특히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사고이월이 많아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2016년에 명시이월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예산은 61억2천2백만원으로 2017년에 지출이 완료 되었으나 불용액 3억원(2.7% 불용)으로 나타남.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는 2017년 7월 정식으로 개소하였음.
-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건립 사업은 61억 2천 2백만원으로, 예상치 못한 지중 폐기물(기존 매립폐기물, 암반 등) 발생(5,200톤)으로 100일간 공사기간이 연장('16.8.31. → '16.12.9.)되어 기 확보 예산 중 61억 2천 2백만원에 대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음.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건립이 완공되어 발달센터의 건립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에 부수적인 사업이 집행실적이 부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운영 및 어린이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전년('16)이월	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5,315	6,112	△30	11,227	10,927	300 (2.7%)

- 2017년 본 예산에 편성된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시설비 8억8천6백만원 중 6억7천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감리비 1천7백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본관동을 재구성 하여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로 이전한 정신건강의학과 자리를 재구성 하고 남은 공간을 재구성 하여 어린이병원 이용자와 직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임.
- ※ 이 사업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어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완공과 동시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진행이 사고이월 된 것은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편의와 근무환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병원이 3년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어린이병원의 주된 이용자인 발달장애아동들이 공사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어린이병원 본관동재구성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어야 했다는 당위를 부여한다고 할 것임.

〈표〉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재구성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비율)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시설비	886,131	166,405	677,959	41,766 (4.7%)
		감리비	17,046	-	-	17,046 (100.0%)

- 동 사업의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석축보강공사의 경우 2016년 4월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2017년 5월 석축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 7월 본관동 공간재구성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음. 또한 발달센터가 7월에 준공되어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음.
- 그러나 본관동 5~6층이 재구성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발달센터로 이사하는 것이 2개월 뒤인 9월이었으며 본관동 공간재구성 공사가 착수된 것은 10월 30일임. 이에 공간재구성 공사의 물리적 소요시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되었음.
- 동 사업은 발달센터의 설립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발달센터의 건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달센터 및 어린이병원

의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음.

-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 각각 2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수행되었음. 발달센터의 건립이 늦어진 것은 석축보강공사 때문이란 점을 고려할 때 석축 보강공사의 완료일로부터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동 사업이 2016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석축보강공사의 완료일부서의 문제만을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발달센터 준공의 연기사유인 석축보강공사의 준공일부서의 문제만 지적한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재구성 사업

날짜	문제점
2017년 5월 30일 석축보강공사 완료	발달센터 준공시기 연기
-	본관동 공간재구성 설계용역의 완료가 필요한 시기
2017년 7월 14일 발달센터 준공	본관동 5-6층 발달센터로 이사 완료 필요 시점
2017년 7월 28일 본관동 공간재구성 설계용역 준공	설계용역의 준공시기가 늦음
2017년 9월 18일 본관동 5-6층 발달센터로 이사	발달센터 준공 2개월 후로 2개월간 발달센터 기능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2017년 10월 30일 본관동 공간재구성 공사 착수	2018년 2월 준공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건립은 석축보강공사를 통해 예산의 명시이월이 있었으며 발달센터의 운영에의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등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의 증축과 관련하여 매해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남.

- 특히, 석축보강공사로 인하여 발달센터의 준공이 연기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공간재구성 설계용역의 준공이 늦은 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센터 준공 3개월이 지나서야 실질적으로 공간재구성 사업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점은 2015년 1월부터 3년여에 이르는 동안 예산집행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발달센터의 준공이 늦는 점에 대한 시의회의 관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는 단순히 시의회의 관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지난 3년간 어린이병원의 불성실한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이용자인 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 과정에서 주차공간의 부족, 공사장의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다수 접수된 바 있음.
- ※ 또한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바 발달장애 아동 뿐만 아니라 치료시간 중 대기하는 보호자 등도 어려움을 겪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대중교통편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 이용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발달장애 전문 치료병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울며겨자먹기로 긴 시간을 견뎌왔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상의 이유로 발달센터의 정상가동이 늦은 점은 시민에의 봉사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라는 성과보다 발달센터의 증축이라는 성과에 매몰된 행정집행으로 볼 수 있어 동 결산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강도의 심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2) 서북병원 시설비 사고이월

- 서북병원은 청사시설운영관리 사업 중 시설비를 사고이월하고 다시 사고이월 한 사례가 나타남.

※ 사고이월액을 다시 사고이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동 사업은 사고이월액이 다시 사고이월 된 것은 아니며 같은 사업의 같은 통계목에서 발생한 일이나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표〉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2016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차년도 사고이월액	불용액 (비율)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544,430	1,084,260	211,590	64,058 (3.9%)

- 서북병원은 2016년 BL3(생물안전등급 3) 실험실 구축공사를 위하여 10억8천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음. 서북병원은 이에 대하여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인증획득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와 사전협의 및 검토로 16년 11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를 이유로 사고이월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협의를 빨랐다면 사고이월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사고이월 처리가 타당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표〉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2016년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재)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원인행위 미필액)	집행잔액
계	1,320,000	1,320,000	1,119,877	215,387	1,084,259 (179,769)	20,353
공사비	1,320,000	1,320,000	1,119,877	215,387	1,084,259 (179,769)	20,353
도급비	518,053	518,053	513,944	36,893	447,051	4,108
관급비	801,946	801,946	605,932	178,493	607,208 (179,769)	16,244

- 동 사업의 사고이월과 집행과 관련하여 2016년의 사고이월액에는 원인 행위미필액이 1억7천9백만원 존재함.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사고이월금액의 약17%에 이르는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서북병원에서 밝히는 대로 11월 18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가 끝났다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보이며 (서북병원에서 밝히는 바 예상 공사기간은 150일임) 사고이월액 중 원인 행위 미필액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외적 사용인 사고이월을 하기 보다는 같은 예외적 사용이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하는 것

이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 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그러나 서북병원이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사고이월 한 것은 2017년에 2016년분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것 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시설비를 사고이월하여 집행한 바 있음. 2017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 예산은 스팀형 흡수식 냉동기(560RT) 제조구매 설치를 위한 예산임.

〈표〉 서북병원 사고이월(2017회계년도)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재)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원인행위 미필액)	집행잔액
계	250,000	249,224	249,224	-	249,224	776
공사비						
도급비	250,000	249,224	249,224	-	249,224	776
관급비						

- 서북병원은 사고이월 사유로 구매방침(17년 7월) 이후 조달구매를 발주했으나(17년 10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미등록된 사양이므로 시 자체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시 계약심사 후 계약의뢰 하여 공고 및 계약체결 한 바 18년 2월에 납기가 완료되어 사고이월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조달청에 모든 사양의 물품이 등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북병원의 해

명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본예산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방침이 하반기인 7월에 수립되는 점, 방침 수립후 조달구매 발주에도 3개월이 걸린 점 등은 예산집행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두 건 모두 예산의 집행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시설의 설치, 장비의 구매와 같은 경우는 되도록 상반기에 집행하여 사고이월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두 사업 모두 본예산 편성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시기가 늦는(2016년 질병관리본부 협의 11월, 2017년 방침수립 7월,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 10월) 것은 올바른 사유로 여기기 어려워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위로 여겨진다 할 것임.

다. 예산 불용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필요

- 시민건강국은 23개 사업에서 1억원 이상 불용하였으며 총액은 64억9천2백만원임. 1억원 이상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집행잔액이라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직영병원의 경우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18년도 예산심의회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과도한 예산편성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집행잔액 외에도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던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사업계획이 좌초되는 경우도 나타남. 안전망병원의 경우 사업환경의 변화로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불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많은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집행에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표>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 불용사업(사업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등(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00	280,000	국비교부금 감소에 따른 집행액 축소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 확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50,000	135,822	- 공사지연 및 지역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한 보건지소 공사일정 지연으로 2017년 개소예정 지소의 일정 연기 - 개소일정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잔액발생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75,000	110,642	민간의료기관(무료)2개소폐업으로진료의뢰실적저조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8,439,760	929,677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2개소 시설폐지신고등으로인한인건비, 운영비잔액및시설종사자퇴사 및신규채용등변경에따른인건비 929백만원잔액발생 - 시설 폐지 (2개소) 로 인한 미사용 : 2억4천 · 폐지(2개시설-주거시설) : 연우 (광진구), 무지개동지(강서) - 신규 직업재활시설 미선정으로 미사용 : 2억 5천 · 직업재활시설 신규시설 적격 심의 1개소 선정 - 보조금 지원시설 94개소 329명 퇴사 및 신규채용,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인한 등 인건비 차액분 발생 : 3억 3천 - 사회복귀시설 복지부 평가 인센티브 미사용 : 1억
보건의료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금	3,728,015	218,309	수탁기관선정어려움으로인한불용액발생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아이존) 운영				- 신규아이존 공모방침수립(17. 4월)→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17. 5월)→시의회 민간위탁 동의(17. 6월)→일상감사의뢰(17. 9월)→공모(17. 10월)→적격자심의회(17. 11월)→결과 공모기관 '부적격' 처리되어 추가 1개소 운영 못함.
건강 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무관리비	390,462	105,013	낙찰차액 15,700천원 2017. 실내골프장등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구역안내표지및홍보물을 제작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 서각종금연홍보컨텐츠등과함께 일괄제작하여배부함에 따라홍보 예산집행잔액발생
건강 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550,000	367,000	흡연시설설치지치단체자본보조 :흡연시설3개구신청4개설치(18 3백만원) 지역주민의 반대 등 일선 자치구의 장소확보 어려움으로 공모사업 신청 및 지원 저조로 흡연실 설치 집행잔액 발생
건강 증진과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9,543,814	240,00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간재원으로 변경되어 불용
건강 증진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선천 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비)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928,370	357,158	집행사유출생아수감소로보건복지부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으로 매칭 시비 불용됨
건강 증진과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5,938,534	521,824	찾.동 사업 4단계 일부자치구 시범사업에 따른 인력 축소로 예산 미교부(16명분)하여 집행 잔액발생
식품 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767,300	647,321	농식품부에서 불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학교우유급식 지침을 예정가(430원)의 88%~90%이상(378원~387원) 수의 계약하도록 개정하였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가 입찰계약을 선호 하여 계약단가가 하락하여 집행잔액 발생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식품정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673,760	272,080	집행잔액
생활보건과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920,163	135,356	-질병관리본부내시감액에따른 국시비매칭잔액 -학교, 직장등집단시설결핵유행 대비하여편성하였으나, 유행미 발생에따른집행잔액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790,000	172,739	.당초 관악구 봉천동 (구)가입장을 관리전환 받아 증축예정이었으나 에스플렉스 입주로 예산절감
동물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시설비	200,000	190,220	6월 착공전 주민(506명)의 반대로 공사추진 중단
동물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100,000	6월 착공전 주민(506명)의 반대로 공사추진 중단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및 구료비	5,806,262	533,163	원화의료병동간병인파견용역계약낙찰차액96백만원발생 기동병상수감소(368병상→357병상)에따른입원환자급식위탁 운영비359백만원집행잔액발생 에이스클리닉 미운영(전문의 부재)으로 인한 위탁검사 감소로 집행잔액 40백만원 발생 예산수립시소요예산을정확히예측하여예산과다편성사전예방
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831,863	317,146	에너지절감효과제고를위한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및고효율대형가스보일러교체(2대)로에너지효율증대 도시가스 요금 단가 조정(9.7% 인하)으로 인한 요금 절감 2017년11월도시가스단가인하(9.7%)로도시가스사용량이증가(992천m)하였음에도약303백만원의사용요금절감 예산수립시소요예산을정확히예측하여예산과다편성사전예방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및구료비	3,345,188	150,584	급식 위탁용역 시 계약단가와 진료수가(식대) 차액 발생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등 집행잔액
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공공운영 비	857,208	156,058	공공운영비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요금단기하락 및 병원 직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 따라 지출 잔액이 발생
어린이병 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및구 료비	2,915,999	115,032	급식용역 및 간호간병인 위탁용역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어린이병 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11,227,838	300,833	공사 사후정산 보험료 등 집행 잔액
어린이병 원 원무과	기본경비	공공운영 비	811,901	136,796	전기, 가스, 수도, 차량운영비 등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 통계목별로 20%이상 불용사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사업의 수는 세부사업명 기준 45개이며 총 불용액은 20억3천5백만원임.

〈표〉 시민건강국 통계목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천원)

연 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집행잔액	불용률
1	보건의료 정책과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무 관리비	285,000	60,327	21.2%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민건강회의 운영	사무 관리비	18,000	4,695	26.1%
3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사무 관리비	172,000	51,012	29.7%
4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보조금(국비)	사무 관리비	27,000	20,900	77.4%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집행잔액	불용률
5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등(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340,000	280,000	82.4%
6	보건의료정책과	유해약물 안전관리	의료및구 료비	1,000	1,000	100.0%
7	보건의료정책과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재난응급의료부 선통신망 운영(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920	33,310	22.1%
8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57,500	56,169	35.7%
9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75,000	110,642	63.2%
9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50,000	60,000	40.0%
10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무 관리비	52,965	12,335	23.3%
11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시설 부대비	7,084	5,715	80.7%
12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사무 관리비	400	130	32.5%
13	보건의료정책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41,770	9,223	22.1%
14	보건의료정책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60,160	33,406	20.9%
15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무 관리비	390,462	105,013	26.9%
15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월액여비	43,200	20,870	48.3%
15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550,000	367,000	66.7%
16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무 관리비	12,960	8,152	62.9%
17	건강증진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무 관리비	63,000	24,066	38.2%

연 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집행잔액	불용률
18	건강증진과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사무 관리비	24,000	5,200	21.7%
19	식품정책과	축산물 수거검사-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국비)	공공 운영비	5,000	1,002	20.1%
20	식품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767,300	647,321	36.6%
21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수거 검사	공공 운영비	19,800	5,943	30.0%
22	식품정책과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사무 관리비	7,000	5,643	80.6%
23	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 관리	재료비	80,460	40,089	49.8%
24	식품정책과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73,600	60,800	82.6%
25	식품정책과	기본경비	월액여비	21,600	4,840	22.4%
26	생활보건과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525	196	37.3%
27	생활보건과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사무 관리비	8,312	2,070	24.9%
27	생활보건과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10,000	6,835	68.4%
28	생활보건과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3,400	16,095	37.1%
29	생활보건과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공공 운영비	16,000	9,965	62.3%
30	생활보건과	병원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 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국비)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48,500	98,500	22.0%
31	생활보건과	결핵 관리-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비)	국내여비	2,400	2,184	91.0%
32	동물보호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기타 보상금	6,400	5,300	82.8%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집행잔액	불용률
32	동물보호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800	4,009	34.0%
33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790,000	172,739	21.9%
33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10,000	10,000	100.0%
34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안심보험(주민참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50,000	43,000	86.0%
35	동물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정 및 운영	사무 관리비	150,000	46,600	31.1%
35	동물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정 및 운영	시설비	200,000	190,220	95.1%
35	동물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정 및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100,000	100.0%
36	동물보호과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	사무 관리비	4,500	1,695	37.7%
37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3,110	78,817	35.3%
38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144	12,258	67.6%
38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10,800	3,729	34.5%
38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10,584	6,264	59.2%
38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보상금	2,000	2,000	100.0%
39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감리비	17,046	17,046	100.0%

연 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집행잔액	불용률
40	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56,000	21,180	37.8%
41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53,970	17,856	33.1%
41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행사실비 보상금	40,320	17,448	43.3%
41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보상금	8,900	8,900	100.0%
41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연금 지급금	24,750	24,750	100.0%
42	은평병원 원무과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520	3,738	20.2%
42	은평병원 원무과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2,000	2,000	100.0%
43	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56,000	26,046	46.5%
44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5,898	84,365	25.1%
4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9,131	64,329	32.3%
4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 운영비	20,000	13,282	66.4%
4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 보장적 수혜금	100	100	100.0%
4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29,280	11,754	40.1%
45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보상금	6,000	5,000	83.3%

1)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 서북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불용하여 8천4백만원 불용하였음. 서북병원은 이에 대하여 1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명(축탁직 6명, 기간제 3명)의 청소노동자를 고용하였고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3명 중 2명이 중도 퇴사 하는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해명함.
- 동 예산 불용 사례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먼저 10인을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뒤 9인을 채용하기 위하여서 예산을 집행한 점, 9인 중 2인이 중도퇴사 하였는데 1인만 채용한 점 등은 심의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 특히, 2017년의 정책기조가 “일자리”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직영병원인 서북병원에서 일자리의 수를 감소시킨 것은 서울시 및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면과 예산집행의 자의적인 면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표〉 서북병원 불용액(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불용액	불용비율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5,898	84,365	25.1%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9,131	64,329	32.3%

- 구체적으로 서북병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음. 청소인력 10인에 해당하는 예산을 심의받았으나 실제로는 축탁직6명, 계약직3명을 채

용하였음. 이들의 주요 업무는 결핵병동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전문성 보다는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노출시간이 길수록 위험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데 각각 10분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퇴사하자 1명만을 채용하고 남은 인건비를 기존근무인력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이 후생복지라는 것은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사용한 것임. 전술한바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상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러한 집행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임.
- 또한 불용액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유가 존재함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한 바 있음. 서북병원은 2017년 12월 31일 퇴직한 촉탁직 2인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을 2018년 예산으로 1천7백만원 지급하였다고 밝혔음. 불용액이 8천4백만원이 있었고 촉탁직 2명의 퇴직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지 않고 2018년도의 인건비를 사용하여 2017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여겨짐.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 예산을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음. 특히,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인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은 건강증진과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전체 63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억3천만원을 감액 추경하였으며 각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1억원 불용(26.9%), 월액여비는 2천만원 불용(48.3%), 시설비는 1천5백만원 불용(15.3%),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경우 3억6천7백만원 불용(66.7%)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대량의 불용액이 발생함.

〈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예산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건강 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무관리비	390,462		390,462	105,013 (26.9%)
		공공운영비	4,224		4,224	60 (1.4%)
		월액여비	43,200		43,200	20,870 (48.3%)
		민간위탁금	400,000		400,000	26,233 (6.6%)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36,447	-333,282	4,503,165	0 (0.0%)
		시설비	103,352		103,352	15,772 (15.3%)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50,000		550,000	367,000 (66.7%)

- 사무관리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이 복지부에서 직접 배부하여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역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표지의 경우 손상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였다고 함. 학교 앞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 표지판 부착에 따른 홍보비,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표지판 설치 등 시비사업의 경우 사업환경에 변화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짐.
- 이 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흡연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5억5천만원 중 3억6천7백만원을 불용하여 66.7%의 불용률을 나타냄.
- 집행부는 이에 대한 사유로 신청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작고 기초자치단체들이 흡연시설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어 집행이 부진하다고 밝힘.
- 그러나 자치단체에 공모시점이 건강증진과-13989호(2017년 7월 6일)이었던 점과 발송 공문에도 사업비 총액이 4억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은 집행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기간을 연장한 것도 3일간만 연장되는 등 공모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실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반기 중 공모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하반기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반기 중 공모일정을 자치구에 알리고 하반기 중 교부하는 방법도 고려가능하다고 사료됨.

※ 흡연시설의 설치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일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적절한 흡연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흡연자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동 사업이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금연구역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흡연시설의 적절한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라. 예비비 사용

- 시민건강국은 예비비로 1건, 2억1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예비비 사용 사유는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과의 소송이며 소송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시민건강국 예비비 사용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보건의료 정책과	소송판결금 지급	배상금등	0	215,762	215,762	0 (0.0%)

□ 소송 개요

○ 사건명 : 사용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273)

○ 당사자

- 원고 :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

- 피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대륙아주)

○ 소 가 : 596,760,556원 (판결금 : 208,866,867원)

○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구)수탁기관인 원고가 위·수탁 협약이 만료된 '15.9.16.부터 '15.10.13.까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환자를 진료한 진료비(인건비,약제비,급식비)와

- 원고 소유의 통행로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통행료, 경비실 및 기관실 인건비,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주차장 이용료 등)를 청구함

- 소송결과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용된 사항은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음. 동 소송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 판결요지

- 원고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통행로 사용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토지를 기부체납할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함

- 그 외 사용료는 원고의 시설물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2015.10.14.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함)

※ 판결금 세부 내용

(단위: 원)

원고측 청구내용			결과
청구항목	청구기간	청구액	
합 계			208,866,867
진료비	'15.09.16~'15.10.13	351,781,784	기각
사용료	'15.09.01~'16.10.31	244,978,772	208,866,867
통행료	'15.09.16~'16.11.15	11,610,222	기각
경비인건비	'15.09.01~'16.10.31	32,386,014	29,645,423
기관실인건비	'15.09.01~'16.10.31	50,744,862	45,233,948
도시가스요금	'15.09.01~'16.10.31	79,675,373	72,133,028
상하수도요금	'15.09.01~'16.10.31	63,488,301	54,780,468
주차장이용료	'15.12.01~'16.05.31	7,074,000	7,074,000

- 이 소송의 결과로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소송이 끝이 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원고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서울시에 사용료를 요구한 것은 2015년에서부터 1년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도 해당기간 중에 대한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소송제기가 합당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통행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바 있음.
- 그렇다면 현재 원고의 주장이 일부인용된 소송이 하나의 판례가 되며 2016년에서 2017년의 1년간 사용료, 또한 2017년에서 2018년의 1년간 사용료 등에 대한 소송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소송패소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예상된다 할 것임.
- 그렇다면 현재 원고의 주장이 일부인용된 소송이 하나의 판례가 되며 2016년에서 2017년의 1년간 사용료, 또한 2017년에서 2018년의 1년간 사

용료 등에 대한 소송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소송패소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예상된다 할 것임.

※ 또한 서울시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참고해 보면 결과적으로 동 판결에 대한 서울시의 항소가 의미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여 앞으로 용인 병원유지재단과 서울시 사이의 사용료와 관련된 다수 소송이 예상된다 할 것임.

-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을 서울의료원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추후 용인병원유지재단과 사용료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병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만 부당한 사용료 주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 판결문에서 밝히는 바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제기한 통행료 등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음.

3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675억3천9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7억3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9억6천7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72억7천5백만원임.

〈표〉 `17 식품진흥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조 성 액
	①	②=③-④	③	④	⑤=①+②
식품진흥기금	67,538,861	△263,928	3,702,674	3,966,602	67,274,933

-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됨. 일반회계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지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 이러한 이유에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리·운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2016년의 기금사용과는 달리 2017년은 기금사용에 있어 변경사용이 존재함. 이는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시행함에 따른 기금의 변경사용은 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7 식품진흥기금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당초예산(A)	변경안(B)	증감(B-A)
지출계획 계		10,902,120	10,902,120	0
식품안전 위생 관리(식품진흥기금)		3,776,892	4,509,892	733,000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500,000	500,000	0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500,000	500,000	0
	교육·홍보사업	647,460	647,460	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73,460	73,460	0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74,000	574,000	0
	식중독 예방사업	175,000	175,000	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75,000	175,000	0
	음식문화개선사업	1,604,116	1,604,116	0
	음식문화 개선	810,000	810,000	0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10,000	210,000	0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584,116	584,116	0
	식품안전관리사업	799,316	799,316	0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101,495	101,495	0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25,800	25,800	0
	식품안전 전문교육	44,600	44,600	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14,700	314,700	0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73,388	173,388	0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04,333	104,333	0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10,400	10,400	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이전)	20,000	20,000	0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1,000	31,000	0
	자치구 식품안전 및	31,000	31,000	0

세부사업명		당초예산(A)	변경안(B)	증감(B-A)
	위생분야 종합평가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0	733,000	733,000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0	72,000	72,000
	"모든 정보가 한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0	40,000	40,000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0	200,000	200,000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0	60,000	60,000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화	0	253,000	253,000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차단	0	88,000	88,000
	시민먹거리지킴이 1만명 양성	0	20,000	20,000
	재무활동비(식품진흥기금)	7,120,228	6,387,228	△733,000
	예치금	7,120,228	6,387,228	△733,000
	여유자금 예치	7,090,228	6,357,228	△733,000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사용이 있었다고는 하나 먹거리마스터플랜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주된 관심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먹거리 마스터 플랜으로 인한 변경사용예산의 다수 통계목이 사무관리 비로 편성되어 있는 등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기금 사업 운용에 있어서도 변경사용의 경우 꼭 필요한 상황에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변경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